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



학생인건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인건비 부당회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사용하는 행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ex)재료비나 장비비, 연구실 운영경비, 워크숍비용, 학회 참가비 등의 공용비용으로 사용
-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없이 학생인건비 일부 감액 또는 회수
ex)학생연구자 근무태만을 이유로 학생인건비를 임의 감액 또는 회수 - 연구참여확약서 내용대로 학생인건비를 지급해야하므로 연구참여확약서 변경없이연구책임자가 임의로 학생인건비 지급액을 조정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인건비 확약 월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연구책임자나 동료 학생연구자가 학생인건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학생 연구자는 거부해야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인건비 부당회수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별표6에 따라 최소5년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께서는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참여약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 학생연구자는 부당업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해도 개선이 되지 않거나,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를 강요 받은 경우,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연구부정 신고센터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로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1. 학생연구자 고충 상담 문의

산학연구팀 (yeon3423@smu.ac.kr)
041-623-0358

2. 상명대학교 연구부정 신고센터

https://www.smu.ac.kr/iacf/research/report_center.do

연구부정행위 제보시 필수 작성 사항

1. 피조사자 (소속 등 인적사항)
2. 연구부정행위 대상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3.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
4. 해당 제보자의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구부정행위 제보 방법

1. 구술 제보 (산학연구처(학무관M505호) 방문 후 면담)
2. 서면 제보 (우편제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산학연구처 연구윤리 담당자)
3. 전화 제보 (041-550-5498)
4. 전자우편 제보 (천안 연구윤리담당자: 400344@smu.ac.kr)
5. 온라인 제보 (천안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로그인 → 연구부정 신고센터클릭 → 등록)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증거 불충분 시 접수-조사 불가함